제919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 개정안 (공정거래위원회)	1.경제분석 의견서 제출 여부 통지(신설) ㅇ피심인이 경제분석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제출일자를 변경하는 경우, 제출예정일로부터 최소 2주 전까지 제출 여부를 통지하여야 함 ▶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	1.비중요
2	내진설계 일반(KDS 17 10 00)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내진설계 시 액상화 평가 방법(강화) ㅇ (규제 대상 시설물) 「건축물 내진설계기준(KDS 41 17 00)」에 명시된 건축물의 중요도에 따른 내진등급 특, Ⅰ, Ⅱ등급 시설물 ㅇ (규제내용) 규제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액상화 평가 기준에 따른 액상화 평가 실시 내용 구체화 (평가주체(지반분야 책임기술자) 명시 등) ▶내진설계 일반(KDS 17 10 00) 제4.7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3	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개정안 (소방청)	1.분리도급 예외 공사(신설) ㅇ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의 예외로서 '공사 성질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함 - 문화재수리에 포함된 소방시설공사로서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자와 소방시설공사업자가 함께 수행해야 하는 공사 - 일정규모의 재개발·재건축사업을 조합 또는 토지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직접 시행하는 공사 ▶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제3조	1.중요
4	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(소방청)	1.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(강화) ㅇ 경종의 무선식 관련 기능 기준을 추가 ㅇ 「경종의 우수품질인증 기준」(소방청 고시) 및 국제기준을 준용하여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기준 보완 ▶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, 제3조의3,제6조,제7조,제9조,제9조의2,제11조의2, 제12조제,12조의2	1.비중요
5	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(소방청)	1.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(강화) ㅇ 발신기의 무선식 관련 기능 기준을 추가함 ㅇ 「발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준」(소방청 고시) 및 국제기준을 준용하여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기준 보완 ▶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, 제4조의3,제9조,제12조,제12조의2,제17조의2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6	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(소방청)	1.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(강화) ㅇ 중계기의 무선식 관련 기능 기준을 추가함 ㅇ「중계기 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준」및 국제기준을 준용하여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기준 보완 ▶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,제3조의2,제3조,제11조,제11조의2,제14조의6,제14조의7,제16조,제16조의2	1.비중요
7	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(행정안전부)	1.정당현수막의 설치장소, 규격 등 표시·설치방법 제한 규정 신설(강화) ㅇ 정당현수막의 장소, 규격 등 표시·설치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– 보행자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설치금지 장소 규정(어린이 보호구역,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장소) – 정당현수막의 설치규격 규정(10제곱미터 이내) – 정당현수막의 설치방법 규정(신호기 등 가림 금지,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 설치 금지 등) ㅇ 그 외 현수막의 표시·설치방법은 행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▶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	1.비중요